

# 치안정책리뷰

##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김학역 편집인 최경환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 권두언

「유엔미래보고서 2040」 과 경찰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경미

### 연구특집

사이코패스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진혁

성폭력법제의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현정

일본 해상보안청의 치안정책에 관한 고찰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현주

경찰서 민원실의 서비스 제공 개선 방향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백병성

### 치안현장탐구

아동학대 대응, 신설된 특별법은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경찰대학 경찰학과 경감 장응혁

클린(CLEAN) 이태원을 희망하며

용산경찰서장 총경 진정무

### 치안정책동향

이탈리아의 마피아, 그리고 조직범죄 동향

주이탈리아대사관 경찰영사 경감 김주영

### 입법·판례동향

2014년 5~6월 주요 입법·판례 동향

###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 「유엔미래보고서 2040」과 경찰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허 경 미



**최** 근 열심히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유엔미래보고서 2040」을 읽고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글로벌 미래를 연구하는 그룹으로 유엔 산하의 각 연구기관 및 다양한 국제기구들로 구성되어 인류의 지속성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그룹이다. 매년 세계미래학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 인류사회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는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엔미래보고서 2040」은 3,000여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 특히 서문에서 2014년부터 2060년까지 미래 예측 연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도표 중 필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경찰과 관련되는 몇 가지 예측을 소개한다.

- 2014년  
구글 글래스가 본격 출시되어 컴퓨터의 기능을 확장한다.  
: 교통 및 수사경찰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세계 최초로 달 관광객이 탄생한다.  
: 시민들이 간다면 그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도 가야한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충돌제어 시스템이 의무

- 적으로 장착된다.  
: 교통신호기, 무인카메라 등의 운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수사경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3D프린터가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며, 널리 보급된다.  
: 지폐위조, 필로폰 등 마약제조 등이 늘어날 것이다.

- 2016년  
고화질 CCTV가 세계 어느 곳이나 설치된다.  
: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에 도움을 주겠지만, 프라이버시와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주에 최초의 호텔이 건설된다.  
: 그곳에 마을이 형성될 것이고, 민간경비요원도 파견되어야 하고, 파출소와 경찰서가 필요할 것이다.

- 2017년  
전자종이가 보급되어 종이 없는 사무환경이 만들어진다.  
: 경찰을 비롯하여 행정기관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수백여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2018년  
휴대용3D 스캐너가 보급된다.  
: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날 것이다.

- 2019년  
무인자동차기술이 세상을 연결시켜준다.  
: 무인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시위집회진압 차량이 등장할 것이다. 경찰의 신규채용 조건으로 운전면허 소지를 구태여 요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 성폭력법제의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현정

### 서론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형법 및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2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2012년 12월 11일 제52회 국무회의를 거쳐, 동월 18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강간죄 등의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형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안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학계나 여성단체 등에서 강하게 주장되었던 강간죄의 친고규정을 폐지한 것과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개정한 것,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여성단체 등에서 강하게 주장되어 왔던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성중립적으로 규정한 것, 유사강간죄를 신설한 것,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것은 성폭력관련 법제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대처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성폭력범죄의 근본적인 부분을 개정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개정에 의할지라도 여전히 남성에 의한 남성강간을 포섭하기 어렵고,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개정형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행위태양은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강간과 남성강간은 여전히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 ‘강간’은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간음’은 ‘부부 이외의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강간죄에 있어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부부강간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학설과 부정하는 학설, 실질적인 부부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었으나,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므로 부부강간죄는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민법상의 동거의무, 부부간의 성적 충실의무를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나, 동거의무나 성적 충실의무에 강제적인 성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부부강간죄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행위태양으로 ‘간음’을 규정하고 있는 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비록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가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판결이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남성에 의한 남성강간죄의 성립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음’이 ‘남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기에 남성 대 남성의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형법에 의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 것은 ‘여성’에 의한 ‘남성’강간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제적 성적 행위를 ‘강간’, ‘강제유사성교’, ‘강제추행’으로 3분류하고 있었으나, 개정 전 형법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2분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법에 따르면 ‘성기 대 성기’의 삽입이 아닌 성기에 대한 성기 이외의 삽입행위나 항문·구강에 대한 성기 삽입 행위 등 강간죄에 비견될 만큼 불법이 중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형법에서도 강제적 성적행위를 3분류하여 특별법과 형평을 맞추어 유사강간죄를 신설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와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인간의 신체 중 무엇인가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성의) 성기, 항문, 구강, 코, 귀”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기에 대한 성기의 삽입은 강간이 될 것이고, 항문·구강에 대한 삽입은 명확히 유사강간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코와 귀에 삽입하는 것까지 유사강간죄를 인정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남성의 성기를 코나 귀에 삽입하는 행위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법의 영역에서 극히 드문 경우까지 예상하여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기본법인 형법에 ‘... 등’이라는 예시적 법률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은 행위’ 역시 손가락 이외에 사람의 신체에 무엇인가 삽입할 수 있는 것은 발가락과 코, 혀 등이 존재하며, 도구 역시 성기구만을 의미하는지, 그 이외의 물건도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 이 역시 변태적인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과도한 형벌권 집행의 우려가 있다. 또한 친고죄 폐지로 인해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제2·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10년 이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전담조사 및 전담재판부 구성,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변호사 선임의 특례, 영상녹화 등 다양한 피해자보호방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3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보다 강화된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결론

필자는 개정 형법의 문제점으로 ‘간음’의 의미 때문에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부부강간이나 남성에 의한 남성강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 모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비판과 피해자 보호방안의 마련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강간죄의 행위태양인 ‘간음’을 개정하여, 강간의 행위태양으로 ‘간음’ 대신 ‘1호, 성교행위’, ‘2호, 구강 또는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강제적 성적행위를 강간 등(성교행위, 항문·구강성교)과 강제추행으로 2분류하는 방법과 현행 3분류 체계 하에서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셋째,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제도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성적 경력이나 성적 경향 등을 증거로 사용함에 제한을

두어야 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필요적 변호사건에 준하여 국선변호사 선임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http://www.psi.go.kr)).

####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강소영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연구관

####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374 (경비) 61-2374  
 • e-mail : [webmaster@psi.go.kr](mailto:webmaster@psi.go.kr)





## 경찰서 민원실의 서비스 제공 개선 방향

- 방문민원, 원스톱 제공 서비스가 만족도 높아-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 백 병 성



행정기관은 민원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고 처리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려는 민주행정에 있어서는 민원서비스가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사무이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서비스는 한 해 동안 약 1,840천 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이들은 교통관련 민원을 비롯하여 진정, 건의, 고소·고발, 헤어진 가족 찾기, 집회신고, 분실·습득신고, 화약류관련 신고, 청원경찰, 총포 관련 민원, 각종 증명발급의 민원들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민원사무를 주민위주로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무과 소속이었던 민원실을 청문감사관실로 이관하여 민원인의 불편불만 사항을 상담·해소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속 또는 조사장소를 지도·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13년에는 『공감치안구현단』의 ‘경찰 민원서비스 종합개선 추진계획’에 의해 민원사무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범위를 확대한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민원서비스 제공 구조는 상대적으로 수요자인 민원인보다는 공급자의 편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찰서민원 중 교통민원과 증명서 발급을 제외한 많은 민원은 경찰서 1층이나 별관의 민원실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경찰서 본관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야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민원종류기준으로 약 60% (방문 민원인수 기준 약 30% 내외)가 경찰서 본관의 담당처리부서에서 접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방문민원인은 경찰서 본관에 위치한 담당부서(예,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과 등)에 직접 찾아가 상담이나 면담을 청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서는 범죄나 안전문제를 취급하는 관공서이다 보니, 일반 관공서의 건물구조와 달리 본관 1층 입구에서부터 적정한 절차(방문신고)를 거쳐야 하고, 사무실출입문 앞에는 “통제구역”, “외부인 출입절대금지” 등 민원인에게는 다소 낮은 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민원처리 담당자 역시 민원인의 방문하기를 기다렸다가 민원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민원인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보다 친근하거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민원인은 친근하지 않은 경찰서 본관 3~4층의 처리담당부서까지 방문하여 담당경찰관을 찾아 민원인에게 친근하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민원서비스를 요청해

야 한다. 그러다보니 경찰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수준은 다른 공공서비스인 우체국, 구청이나 세무서 민원서비스 등과 비교해서 낮은 실정이다(한국생산성본부 조사결과: 2013년 국가고객만족도 경찰 247위, 상수도 234위, 세무 152위, 철도 144위, 우편택배 39위).

민원인의 만족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속하고 친절 한 태도에도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외 다른 변수들이 작용하게 된다. 그것은 수요자인 민원인의 수고를 최소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다. 즉 경찰서 본관의 처리부서에까지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만족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서 민원이용자들은 한 장소에 민원을 모두 처리한 경우 만족도가 8.22점인 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의 만족수준은 6.21점으로 나타났다.

경찰민원의 특성상 2차 상담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처리부서로 자리를 옮겨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접수, 신청, 신고, 고발 등 민원업무를 1차 처리는 민원실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 치안행정’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은 분위기 어색한 경찰서의 담당부서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을 일도 없고, 담당자를 확인 후 경찰관들이 일하는 사무공간에 이방인(?)이 방문하여 민원서비스를 받는 것 보다는 편리하고 편안하게 느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당장 모든 민원을 경찰서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앞으로 새로 짓거나 옮기게 되는 경찰서는 구청과 같이 1층 종합민원실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민원업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관서를 지을 때부터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또 민원실의 운영시스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확대하여 교통과 증명발급 외에 생활안전, 경비, 수사, 형사 관련 1차 서비스도 민원실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도 민원실장을 중심으로 대민(고객)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부 3.0’의 정신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제공’에도 맞는 일이라고 본다. [PSI](#)



## 아동학대 대응, 신설된 특별법은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경감 장 응 혁



그간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많은 사안들이 성폭력을 시작으로 최근 몇 년간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이 4대약으로 함께 규정되며 ‘전담경찰관’ 및 ‘가정폭력 솔루션팀’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 대응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다. 여기에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 작년에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사건들은 20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을 의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사망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해 어떠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감수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항상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주장된다. 그러나 이것도 만들어진 법이 그 안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확한 해법을 담고 있느냐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의한 응급조치(제12조),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임시조치(제13조), 검사의 청구에 의한 판사의 임시조치(제14조),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제26조), 판사의 보호처분(제36조), 판사의 직권 또는 아동 및 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보

호명령(제47조)과 그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제52조)을 두어 그간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 도입된 모든 조치들을 망라하고 있다. 특별법은 오는 9. 29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러한 백화점식 대응이 형사사법기관으로 하여금 과연 어떠한 조치에 중점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응하면 좋을지 알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설된 특별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혹자는 여기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검찰·법원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해결될 문제이며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동학대치사(제4조), 아동학대중상해(제5조)뿐만 아니라 상습범(제6조)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제7조)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일반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8년 시행 이후 10여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입한 조치이므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경우 운용여하에 따라 특별한 문제없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는 그것이 비록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될지 몰라도 각각의 특례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우선 주목하여야 한다. 즉





## 이탈리아의 마피아, 그리고 조직범죄 동향



주이탈리아대사관 경찰영사(경찰청 외사국) 경감 김주영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마피아’라는 단어는 범죄조직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마피아’란 단어의 고향이 이탈리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탈리아 마피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마피아는 원래 ‘시칠리안 마피아’를 의미하던 용어에서 오늘날 이탈리아에서는 범죄조직, 즉 범죄단체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마피아는 원래 정부의 치안능력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 시민들이 스스로의 안전과 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경단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지역별 범죄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오늘날 이탈리아 주요 마피아 단체를 조직별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과거와 비교 시 영향력 및 규모 등에서 축소되었긴 하나, 현재 이탈리아 내에는 Sicilian Mafia 등 4개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밀입국, 마약거래, 자금세탁, 암살, 정치권과 결탁한 각종 이권개입 등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군경찰 내 식품·의약전문수사팀(N.A.S)에서는 마피아가 불량식품과 위조약품 제조·유통하여 불법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N'drangheta의 활동이 최근 두드러지는데, 동 단체는 베네토 및 에밀리아 등 주재국 북부 산업, 공업 중심지역으로 점차 활동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 코카인 거래시장의 확장세로 인해 여타 마피아 조직보다 비교우위가 강력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필요하다는 각성에서, 2014년 4월 이탈리아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은 N'drangheta 기반지역인 남부 칼라브리아에 추가로 800명의 전문 수사요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얼마 전 프란체스코 교황이 칼라브리아지역을 방문하여 마피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파문하였다.

아래는 이탈리아 주요 마피아 단체의 대강의 소개이다.

▶ **Sicilian Mafia(Consa Nostra:우리의 것)** : 주로 시칠리아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로 1950년 시칠리아 지역의 건축붐에 힘입어 건축계약을 통제하면서 거대자금을 확보하고 국제 마약거래 등 오늘날 국제적인 조직범죄단체로 발전했다.

▶ **Cammora** : 1800년대 나폴리 지역에서 등장한 이래 현재 범죄단체 중 규모측면에서는 가장 크고 강력한 조직이며, 자금세탁, 공갈, 밀입국, 강도, 협박, 납치, 위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며, 가장 잔인한 조직으로도 알려져 있다.

▶ **N'drangheta** : ‘응드랑게따’로 읽히는 ‘N'drangheta’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둔 것으로 역설적이게도 ‘용감한 자’를 의미한다. 이 조직은 1850년대 칼라브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납치와 정치적 부패를 전문으로 하며, 유럽에 유입되는 코카인의 80% 가량에 대한 통제, 헤로인 거래, 살인, 폭파, 위조, 불법도박, 절도, 고리대금업, 밀입국, 납치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acra Corona Unita** : 이탈리아 남동부 뿌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로, 동 지역 와인 및 오일 산업을 대상으로 공갈, 사기, 기타 마약거래에 관여하며, 러시아, 알바니아,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등 국제 범죄조직과 동맹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 마피아 조직들은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등 여러 국가로 진출하고, 밀입국 및 마약유통을 위해서도 동유럽이나 북아프리카계 범죄단체와도 일종의 협력을 유지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 수사 당국은 상기 4개 조직을 주요관심 범죄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최근 몇 년에 새로 등장한 범죄경향으로 Eco-Mafia로 불리는 환경관련 범죄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 환경단체에 의하면 매해 3만여 건의 환경 및 보건 범죄를 통해 마피아가 얻는 수익은 160만 유로에 이른다고 한다 (Legambiente : 이탈리아 환경단체). 그간 형법에 환경범죄 사항이 불포함되었다가 지난 4월 하원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범죄수익의 문제를 넘어서, 쓰레기 처리 과정에 범죄단체가 개입되어 아무 곳이나 방치되고 버려져, 위험물질로 인해 토지 등이 오염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적어도 향후 50여 년 간 이러한 오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수년전 한때 나폴리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두고 마피아가 개입하여

도시 전체에 쓰레기를 쌓아두어 사회정치적으로 문제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마피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직 범죄와의 전쟁을 150여 년 전 통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 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칠리아 내에서 마피아 소탕에 있어서 많은 판사, 검사, 경찰 등 관계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희생자로는 Giovanni Falcone와 Paolo Borsellino 반마피아 (anti-Mafia) 검사 및 치안판사다.

마피아와 정치권의 결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Giovanni Falcone는 끊임없는 마피아의 위협에도 수사 및 재판을 추진하였고, 그의 보호를 위해 여러 대의 위장차 등에 분승하여 이동하곤 하였는데, 1992년 5월 23일 위장차량을 포함한 전 차량을 폭파시킴으로써 Falcone 검사와 그의 부인, 3명의 경호 경찰관이 암살되었다. 올해가 그의 사망 22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탈리아에서는 그의 사망일을 정부차원에서 기념하며 마피아의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실제로 Falcone 치안판사의 사망이 분수령이 되어 그 이전까지 일반 시민의 마피아에 대한 분노가 극대화되고, 정부의 반마피아 운동에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마피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범죄조직의 활동, 자금 및 조직 등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중이다. 주·도시 등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계 각국과의 정보 교류 및 합동작전 수행 등의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

실제로 현지 뉴스에 ‘mafia’를 대상으로 한 경

찰, 군경찰, 재무경찰 등 범집행기구의 주요 마피아 단원 검거, 마피아가 운영하는 기업, 토지, 주택, 빌라, 상가, 포도밭, 자동차 등 보유자산 등의 압수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지 않는 날이 없다.

이와 더불어 국가경찰 기구와 지방경찰 등 국내적 협력 외에도 Interpol, Europol 등 국제 수사기관과 범죄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을 통해 국제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舊) 유고 국가 중에서 특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 및 러시아, 중국 등 국가와의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인접국인 프랑스 및 스페인 등과는 양자협력을 통한 조직범죄 소탕 노력을 진행 중인데, Arab Spring으로 튀니지, 리비아 및 모로코 등지로부터 2012년 약 6만 여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이탈리아, 프랑스 및 스페인의 조직범죄단체와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노력에 공조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2012년 말 정부가 승인한 반부패법이 사회 지도층과 범죄단체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조직범죄 소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조직범죄단체와 테러리스트들과의 협력 현황이 파악되어, 이러한 측면에서의 조직범죄와의 전쟁 및 반테러리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자생 범죄조직 외에도 동유럽, 북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유입된 범죄조직에 의한 각종 범죄활동으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의 치안부담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탈리아 경찰청 수사당국의 분석과 판단에 의하면 한국계 범죄단체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는 프랑스 및 스페인과 관련 MOU를 체결하고 EU 회원국 내에서 테러의심단체에 대한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5월에 개최예정인 밀라노 세계 EXPO 행사도 현재 여러 층 위에서의 마피아 연루설로 인한 스캔들로 인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전히 최근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마피아와 연루되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공직을 사퇴하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현 정부가 향후 어떠한 강력한 의지로 마피아를 사회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PSI](#)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동향’에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한 원고 중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mailto: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